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6-481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4월 일

강 북 구 청 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강북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,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강북 계획을 수립하고
- 나.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함.
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함.(안 제6조)
- 다.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, 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참조 : 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(전화 : 901-7682, FAX : 901-7669, E-mail : luneii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buk.go.kr>) “입법예고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